
경총 건의과제 검토결과

2022. 12.

건의 과제명	검토결과	소관
1.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수량 기준 합리화	수용곤란	화학
2. 설비 검사서류 국제인증 대체	수용	화학
3.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	기시행 대안적용	화학
4. 안전교육 비대면 방식 법제화 및 교육회차 확대	기시행 수용곤란	화학
5. 화학사고 즉시신고 기준 합리화	일부 기시행	화학
6. 장외영향이 없는 사업장의 주민고지방법 개선	기시행	화학
7. 유해화학물질 신규고시 이후 착공시설 영업허가 유예기간 부여	기시행	화학
8.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기한 연장	대안 기시행 중장기검토	화학
9. 화관법상 종사자 범위 합리화	수용곤란	화학
10.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대상 개선	중장기검토	화학
11.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 시 물질 함량 고려	기시행	화학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에 따른 조치 및 신고대상 합리화	대안 기시행	화학
13.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관리자 등 입회기준 개선	중장기검토	화학
14.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관리자 대리 참관자 관리대장 작성 제외	수용곤란	화학
15.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작업 명확화	기시행	화학
16.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적용 제외	수용	화학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배관설비)	중장기검토	화학
18. 유독물질 지정에 관한 예외조항 적극 추진	수정수용	화학
19.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기 추진중	화학
20. 화관법위반사항제2차자진신고기간운영	건의제외	화학
21. 대기개선시설의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마련	중장기검토	기후변화
2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기준 개선	중장기검토	기후변화
23. 반도체 공정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율 기준 완화	기시행	기후변화
24. 배출저감 샘플링 규격 국제수준 변경	수용	기후변화
25. 정유업종 친환경 제품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포함(한국형 녹색분류 가이드라인)	중장기검토	녹색
26. 단일 기업 입주 산업단지에 탄소 저감 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계획 승인 면제	타부처 소관	산업부 소관
27.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완화	수용곤란	대기
28. 특정대기유해물질(아세트알데하이드) 연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수용곤란	대기
29. 비산배출시설 자체개선계획제도 개선	수용	대기
30.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의 TOC 측정 규제 개선	중장기검토	대기
31. 총량사업장의 개별배출구 농도규제 완화	중장기검토	대기
32. 송유관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요율 체계 개선	중장기검토	보건
33. 총량제, 미량 배출시설의 총량대상제외	수용곤란	대기

건의 과제명	검토결과	소관
34. 방지시설 의무가동 예외 조항 추가	수정수용 기반영	대기
35. 권역간 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수용곤란	대기
36. 배출권거래 시 부가세 면제	수용	대기
37. 대기방지시설(흡착탑) 활성탄 교체주기 연장	수용곤란	대기
38. 4.5종 대기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유예	수용	대기
39. 배출허용총량 권역별 할당량 재검토 등 제도 개선	수용	대기
40. 배출허용총량 지역/오염물질 제한 해제	수용곤란	대기
41.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수용	물환경
42. 계획관리지역 내 제지업종 수질배출허용기준 오류 개선	수용	물환경
43. 옥상 알카리 배기 중화 목적 황산 재활용	수용곤란	자원순환
44. 폐기물 분석기관 외 연구, 거래목적 샘플 반출 허용	기시행	자원순환
45.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관련 예외조항 마련	기시행	자원순환
46. 국가목표 내 사업장 자원순환 목표 할당 요청	수용곤란	자원순환
47.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중장기검토	자원순환
4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행정처분기준 중 악취항목의 부담완화	수용곤란	자원순환
49. 방류수 불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규제 개선	대안제시	녹색
50. PVC랩 전면금지 적용 유예	수용	자원순환
51. 반도체업종 대기/수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및 가동개시 절차 변경	기시행	녹색
52. 환통법 허가조건 기준 명확화	수용곤란	녹색
53. 환통법 사후 배출시설 운영기록 보존 항목 명확화	기반영	녹색
54. 토양오염 정기검사 면제 시 수시검사 면제	기시행	물통합
55. 안전진단 서류 제출범위 및 진단항목 명확화	수용곤란, 기시행	화학
56.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가산분 대상에서 개선명령 제외	신중 검토	행안부 소관
57. 대기 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기수용	녹색
58. 대기 TMS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의 합리화	수정수용	녹색
59.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선	수용	녹색

1.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수량 기준 합리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시 설치검사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제출
- (문제점) 가스상 유해화학물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인·허가 규정수량 기준이 낮아 증설 때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발생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 28조

□ 건의내용

- 가스상 물질의 인·허가 수량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설치검사 소량 기준으로 일원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로, 불산의 경우 400kg이상 보유할 때 해당되며, 해외 유사제도(美 RMP, 英 COMAH) 대비 과도하지 않음

<참고. 국내·외 규정수량비교>

구분	무수불산(HF)	삼염화붕소(BCl ₃)	포스젠(COCl ₂)	염소(Cl ₂)
화학물질관리법	400kg	400kg	300kg	4,000kg
미국 RMP	454kg	2,270kg	227kg	1,135kg
영국 COMAH	5,000kg	50,000kg	300kg	10,000kg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해외 유사제도의 제출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하위)규정수량 비교

- 일부 급성독성 가스의 경우 소량(5kg)의 누출만으로도 넓은 사고영향범위(약 50m이상)가 예상되므로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을 기준으로 변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유·누출사고시 영향범위를 산정하는 시설 규모(용량)의 기준으로 기체 5~100kg, 액체 400kg, 고체 2,000kg임

○ 업계에서 건의한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을 적용(순간 최대체류 기준: 최소 5kg~최대 400kg)할 경우에는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기체 5~100kg, 액체 400kg, 고체 2,000kg)보다 강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 또한 성상별 사고영향범위를 구분한 현 규정이 취급시설 관리 및 사고대응에 효과적임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취급시설 간이 검사 기준으로, 현 424개 물질 중 황산·질산 등 액상 물질(120개)은 200kg 이하로 강화

□ 향후계획

○ 해당없음

2. 유해화학물질 시설검사 시 국제인증서류 인정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안전제 도개선TF팀	윤이 과장	043-830-4380
		이지호 연구관	043-830-4381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검사 시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 요구
- (문제점) 반도체 업종의 경우 국제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된 생산 설비를 완제품 단위로 구매하여 설치·사용
 - 해외 장비 제작사가 설비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기밀로 관리하여 서류 확보에 어려움
- (정책대상) 반도체 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5건*(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①제조·사용시설, ②실내 저장시설 ③실외 저장시설, ④실내 보관시설, ⑤실외 보관시설

□ 건의내용

- 반도체 장비와 같이 장비의 안전성에 대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경우 시설검사 시 국제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의견 (수용)

- 모듈·완제품 형태로 제작되면서, 취급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작 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인증을 인정하는 특화 시설기준 마련**

* 배관 재료·강도·두께·도장조치·비파괴시험·내압시험 등이 제작 요구서에 맞게 제작되었다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인증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22.12)

3. 정기검사 신청기간 확대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심승우 사무관	044-201-6837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영업허가자는 매 1년, 허가비대상은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신청
- (문제점) 많은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급시설마다 검사일이 상이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이 중요
 - 정기검사 신청기간(기준일 전후 30일)이 촉박하고, 검사기관과 일정 협의에도 제한적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건의내용

-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해당 시설 정기검사일의 직전년도 10월~12월(3개월)로 개선

□ 검토의견 [기시행(대안 적용)]

- 한정된 검사인력 하에서 효율적 검사·진단 운영을 위해서는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는 현행 신청기간 유지 필요
 - 직전년도에 검사를 신청받아 연간 계획에 따라 검사 진행 시 사업장에서 검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가능

- 다만, 문제점으로 제시한 취급시설마다 검사 기준일이 상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에 나머지 취급시설의 검사를 함께 신청하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21.12.24)」 제6조제5항 시행 중

4. 안전교육 비대면 방식 법제화 및 교육회차 확대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자 및 사업장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 (문제점) 사업장 종사자 교육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에 비해 접근성이 좋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므로 사업장마다 교육 이수율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건의내용

- 비대면 교육방식은 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환경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집합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법제화 필요
 - 아울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교육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사업장 근로자 및 관리자의 교육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

* 현재 사업장 종사자(청소, 경비 등) 및 취급자(16시간 중 8시간)에 한해 온라인 교육 실시중

□ 검토의견 (기시행, 수용 곤란)

-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21.4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5년 화관법 시행 이후 사고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년 코로나 국면 이후 증가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교육 미흡* → 사업장 사고 중 안전기준 미준수에 의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여 비대면 안전교육 확대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 사업장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을 서면교육으로, 법적 안전교육은 비대면으로 실시 등
 - ** 2년간 사업장 사고 117건 중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가 48.7%, 57건(작업수칙 미준수 24건, 취급부주의 17건, 사전점검 미흡 15건 등)
 - 집합교육은 이론교육 외에 실습교육(개인보호장구 착용, VR체험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효과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함

□ 향후계획

- 해당없음

5.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기준 완화 및 명확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백은상 사무관	044-201-6838

□ 제도현황

- (현황)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학물질별 유·누출량, 인명·환경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취급자는 관할 환경청 등에 즉시 신고
- (문제점) 화학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량, 인명·환경피해 여부에 따라 15분 이내 즉시 신고와 빠른시간 내에 신고로 구분
 - 화학물질 유·누출로 인명피해(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 등으로 증명)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대상으로, 인명피해 및 즉시 신고 판단 시점 등에 대한 혼선
 - 즉시 신고기준 위반 시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정책대상) 산업계, 일반국민 등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 건의내용

- 화학사고 즉시 신고 기준 완화
 - 비유해화학물질이 실내에만 소량 유출되고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 신고 면제
 -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인명피해의 경우라도 실내 공간에서 방류벽 외부로 유출이 없는 경우 신고 제외
 - 0.1kg 또는 0.1L 미만은 신고 제외(인명피해 포함)

○ 인명피해와 즉시 신고 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만 산업재해보고 대상
- 화학사고 즉시 신고 시점, 처벌 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부상 정도 등 화학사고의 영향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기준을 명확하게 구분

□ 검토의견 (일부 기사행)

- 현행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85호)에서도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의 경우 유출·누출량이 1kg 또는 1L미만(실험실의 경우 100g 또는 100ml)이고 인명·환경피해 없이 방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하고 있고
 - 병원입원 또는 병원진단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인명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 화학사고 발생 시점에서 이후의 인명·환경 피해, 유출·누출량, 사업장 외부 유출·누출 등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화관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 즉시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우선 신고 후 상황판단 및 대응 원칙)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인명·환경피해가 없는 소량 유출·누출 시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며
-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학사고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제외 수용근란
 - ※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 향후계획 : 해당없음

6. 장외영향이 없는 사업장의 주민고지방법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안전원	심사2과	신창현 과장	043-830-4310
		김재영 연구관	043-830-4337

□ 제도현황

- (현황)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일정수량 이상(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고지하여야 함
 - 고지방법은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외에도 1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 실시(개별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지자체 등 기타고지)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7호)
- (문제점) 고지대상은 총괄영향범위 주민이나, 장외영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고지대상이 없음
- (정책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건의내용

- 장외영향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고지만을 수행하고, 개별통지 등 그 외 1가지 이상 방법 고지 의무는 면제

□ 검토의견 (기시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받은 사업장에서 장외영향이 없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대상이 없어 개별통지, 개별설명 등 그 외의 고지방법 이행이 불가하므로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만으로도 지역사회 고지를 이행한 것으로 유권해석됨
 - 다만, 사업장에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을 통해 명문화 추진(22.10.26)

7. 유해화학물질 신규고시 이후 착공시설 영업허가 유예기간 부여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현행 고시상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 지정일 이전부터 취급해오던 사업장은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이내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기존에 취급하지 않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설치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관법상 제도를 사전에 이행완료 후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해당 물질 취급이 가능함
 - 그러나 일반 물질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된 경우에는 즉시 화관법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둔 것임
- (문제점) 현행 고시의 부칙 규정상 화학시설을 유독물질 지정일 이전부터 가동하던 사업장에서 유독물질 지정일 이후 동일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면 더 이상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
 - 예를 들어 '21.12.28.에 A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24.7.1.까지 영업허가를 완료하면 되지만, '21.12.28.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은 영업허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가동이 불가능함
 - ※ 유해화학물질 지정일 전·후로 설치되는 시설은 동일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특히 반도체 업종의 경우 생산장비가 수시로 신·증설되며 연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비가 설치되는 특성으로 인해 설치 도중에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일 이후 설치되는 시설은 영업허가 완료시 까지 가동할 수 없음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건의내용

- 신규 유독물질을 지정일 이전부터 취급하던 사업장에서 지정일 이후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유예기간(6개월)이 부여되어야 함

□ 검토의견 (기시행)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취급시설 검사 등 영업허가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2.10.6)에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고시 후 유예기간을 적용함

□ 향후계획

- 해당없음

8.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기한 연장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종사자 교육')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 해야 함

* 연간(1.1~12.31)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3까지 보고

- (문제점) 12월에 신규로 입사하거나 파견업무에서 복귀하는 등 해당연도의 교육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변동된 인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현행 화관법상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사업장의 안전교육 담당자들은 매년 12월마다 종사자 교육 누락인원, 신규 입사자 또는 파견·휴직 복귀자 인원 관리 및 교육 안내 등 업무에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시행규칙 제37조

□ 건의내용

- 12월에 근무지로 복귀한 인원 및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교육 실적보고 기한(다음년도 1.31)내에 종사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수료기한 연장 필요

□ 검토의견 (①대안 기시행, ②중장기 검토)

① (대안 기시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사고 대피·대응방법 및 사고시 행동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함

- 종사자 교육은 2시간에 불과하고, 자체교육·훈련, 상시 온라인 교육 (화학물질안전원) 등 교육생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이수가 용이함
- 복직자, 신규자가 연말내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채용시 교육 8시간 또는 근로자 교육 매 분기 6시간)을 받은 경우에는 종사자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상 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으로 인정함

② (중장기 검토) 다만, 12월 복직자, 신규자 등에 대한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안전교육 개선 방안 검토('23년)

9. 화관법상 종사자 범위 합리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이행해야 하는 규제 중 종사자와 관련된 제도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임
 -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연간 2시간의 안전교육 수강 필요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인원 수 규정
 - (문제점) 화관법상 '종사자'는 법적 정의가 없고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수안내서('21.9월)'에 개념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모든 종사자 수에 비해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극소수이더라도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조선소와 같이 종업원이 만 명 이상이고, 대규모 면적의 노동집약형 사업장의 경우 실제 유해화학물질 취급 인원은 도장공정 등에 극소수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근로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 및 장소와 분리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인사, 영업, 기획, 설계, 용접 등 업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 전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비해 안전교육 대상으로 포함되는 종사자가 과다 산정됨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시행규칙 제33조

□ 건의내용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의 범위를 실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 공정, 구역 등 단위로 구체화 필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함

- 종사자 교육대상은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 등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해당되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등에 따른 구분은 불필요함

※ '안전교육 이수안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 종사자 교육은 2시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생 편의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 사업장 자체교육·훈련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도 상호 인정하고 있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 「화학물질관리법」상 종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교육으로 인정됨

□ 향후계획

- 해당없음

10.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 대상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음
- (문제점) 그러나 환경부 행정 해석상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매업 허가를 강제하는 사례가 존재함
 - (사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기업 본사에서 자사 공장의 화학물질 원료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본사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 본사와 자사 공장의 소재지는 다르나 동일 법인이며 본사는 지방 공장의 화학물질 구매 업무를 담당할 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아님
 - (사례2) 기업의 지방공장A, B가 공장마다 각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B 공장간 유해화학물질 재고를 이동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유상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 행정해석 사례 존재
 - (사례3)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로 반출하거나 제품 불량 또는 공정조건 변경 사유로 공급받은 화학물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환경부 행정해석 사례 존재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건의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업에 대한 특례규정 추가 필요
 - 지방공장의 원료구매 업무를 본사에서 담당하는 경우 본사는 판매업 허가대상 제외
 - 동일 법인의 지방 공장간 유해화학물질을 이동하는 경우 판매업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 화학제품의 품질검사, 공급받은 제품의 반품 등 상업적 판매가 아닌 형태로 사업장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판매업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업장마다* 허가가 원칙임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21.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이는 각 허가자의 책임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정하여 의무의 주체와 처분(과징금, 영업정지)의 대상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예)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0이하
 - 기본 본사 등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득 의무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음
- 같은 법인 내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허가자들 간 화학물질을 이동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대한 안전 관리(판매기록의 보존·유지, 판매실적보고 등)가 필요하며, 추후 동일 법인의 지방 공장간 거래 형태, 목적, 관리 주체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음
- 또한 대량거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제품(샘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판매에 해당되며,
 - 다만 품질검사 등 판매목적과 관계없는 외부 반출이나 잔여 유해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한 처분 등은 판매업 허가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음
 - ※ 유해화학물질 반품은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 향후계획

-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판매업 허가제도 개선방안 마련('23년)

11. 시나리오 영향범위 개선 관련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안전원	심사2과	신창현 과장	043-830-4310
		허화진 연구관	043-830-4341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일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은 사고영향범위를 산정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문제점) 혼합물질에 대한 사고영향범위평가방법 필요
- (정책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사업장
- (근거법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9조제6항

□ 건의내용

- 타 프로그램(ALOHA 등) 데이터에 대한 인정기준(근거자료)에 대한 가이드 마련
- KORA* 프로그램의 사고영향범위 산정 보완
 -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 일부 수용액(약 18종)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농도 100%만 반영되어 실제 취급물질 농도로 영향범위 산정토록 보완 필요

□ 검토의견 (기시행)

- (기능개선) KORA*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타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한 결과도 인정하고 있음(단, 산정시 입력한 정보 제시 필요)
 - * (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화학사고시 영향범위를 산출하는 정량적 도구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19조제6항

- 아울러, 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혼합물에 대한 영향범위 결과를 KORA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됨
- 다만, 사용 용이성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KORA에서 직접 모든 혼합물에 대해 산정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곤란
 - ※ 프로그램 사용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장기간 전문교육을 받아야만 이용 가능
- (자료인정범위) 혼합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 정보는 분석시험 뿐만아니라,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도 인정함
 - * 밀도, 비열, 증기압, 연소범위 등
- 상기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은 「KORA 안내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음(22.11.3)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에 따른 조치 및 신고대상 합리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거나,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다양한 조치를 해야함
 - 취급 중단 시 외부인 출입통제, 취급시설 밀폐, 주기적인 자체점검, 동파예방을 위한 보온 조치,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60일 이상 중단 시)
 -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 중단하려는 경우 환경부에 신고해야 함
- (문제점) 화관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일반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는 시설에서 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되, 유해화학물질의 공급만 차단하고 일반 물질로만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도 취급중단에 해당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예) 유해화학물질 A와 일반물질 B, C를 공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A의 공급을 중단하고 B, C물질로만 시설을 가동하거나, 유해화학물질 A 대신 일반물질 D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은 정상 가동 중인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만 취급하지 않더라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밀폐 등의 조치를 해야하나, 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 중단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시행규칙 제39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시설 가동을 60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부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60일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조문을 확대해석 하고 있음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건의내용

- 화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관련 조치 및 신고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 검토의견 (대안 기시행)

-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15.1월)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시 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음(법 제34조)
 - 이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무단방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및 신고 등은 반드시 필요함
- 단, 해당 조치사항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내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급시설 밀폐 등의 취급 중단시 적용되는 조치는 생략 가능함

□ 향후계획

- 해당없음

13.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관리자 등 입회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차량에 상·하차하거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문제점) 상·하차 또는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10L 미만의 소량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2인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동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및 운반시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나, 소량의 화학물질을 다른 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2인이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 건의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작업의 경우 반드시 2인이 참여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량 기준 마련 필요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12.9.) 이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시('15.1.)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

기준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및 다른 시설로 유해화학물질을 옮길 때 작업자 외에 관리자가 입회하여야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 다만, 소포장 용기 이동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 한하여 제외 가능 여부를 사고사례,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겠음
- * 사고 가능성이 없거나, 원격모니터링(CCTV 등) 장비를 갖추어 상시 확인하고 근거리에서 사고 대응할 수 있는 근무자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가능한 경우

□ 향후계획

- 소포장 용기 이동시 입회기준 등 안전성 검토('23년~)

1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관리대장 대체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차량에 상·하차하거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할 수 없으면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대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 참관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업장은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함
- (문제점) 관리자 대리참관자 제도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 매일 수시로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및 운반작업이 이루어 지는데, 매 작업마다 한정된 관리자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매일 수시로 상·하차 및 운반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대리 참관자가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나 이는 사고 예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절차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십~수백장의 관리대장이 작성되므로 서류 관리 작업 부담이 가중됨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건의내용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및 운반작업 시 관리자를 대신하여 참여하는 안전교육 이수자의 경우, 관리대장을 매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 관리자가 해당 인원을 대리참관자로 지정했다는 지정서로 대체 필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관리대장은 유해화학물질의 도난 방지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성명, 연락처, 목적 등을 간략하게 기입하는 사항이며,
 - 서류 관리작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산 입력 자료로 같음하여 기록·보존할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자료 작성에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향후계획

- 해당없음

15.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대상 작업 명확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임경희 사무관	044-201-6932

□ 제도현황

- **(현황)**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려는 경우 도급사유, 도급계획,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취급 및 도급의 정의, 도급신고 대상작업 사례 등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에 명시되어 있음
 - 사례집 내용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은 화관법 제2조(정의)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과 추가로 취급시설·설비의 공사·보수·운영, 검사, 청소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과 ‘도급 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도급을 포함)하는 경우로 규정함
 - 한편, 도급신고 사례집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문제점)** 사례집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도급’ 및 ‘도급 신고 대상’의 범위에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물 내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도급 작업*을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도록 해석함
 - *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내 조명설비 교체, 출입구 문 교체 작업 등 유해화학물질과 관계없는 작업 포함

- 화관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사례집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도급신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

□ 건의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화학사고 예방이 필요한 작업으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함

□ 검토의견 (기시행)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를 해야하며, 취급 및 도급 신고 대상의 범위 등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20.10.)'에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16. 생활화학제품 화관법 제외규정 포함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최재석 사무관	044-201-6840

□ 제도현황

- (현황) 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화평법」에 따라 등록 평가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되고, 지정되면 「화관법」 관리대상으로 자동 연계
 - 「화평법」 시행 이후 유해성심사 대상 확대에 따라 유독물질 신규지정 건수 급증*
 - * 연평균 신규지정 건수 3배 증가(연간 16종 → 50여종: '14, 722종 → '21, 1,082종)
- (문제점) 최근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쯤약(나프탈렌) 등 생활화학제품의 주성분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에 「화관법」 상 주요 의무 부과 예정
- (정책대상) 생활화학제품 유통업체, 마트, 약국 등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 건의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외

□ 검토의견 (수용)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 ('22. 현재 법사위 계류중)
 -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다만,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용도로 취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적극행정을 통해 화관법 개정 시 까지 생활화학제품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행정처분 유예중

□ 향후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지원(계속)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배관설비)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안전제도 개선TF팀	윤이 과장	043-830-4380
		이지호 연구관	043-830-4381

□ 제도현황

- (현황) 설계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 다만, 화관법 시행(15.1) 이전 착공한 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 두께·경도 측정 등의 대체방안을 인정
- (문제점) 내압시험 대체방안으로 위험도기반검사(RBI)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두께 측정 등)를 이행 필요
- (정책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5건*(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 ①제조·사용시설, ②실내 저장시설 ③실외 저장시설, ④실내 보관시설, ⑤실외 보관시설

□ 건의내용

- ‘15년 이전 시설(설계압력이 0.2MPa 초과하는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대체방안에 비파괴시험의 위험도기반검사(RBI)를 인정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배관 내압시험과 비파괴시험의 시행 목적*이 달라 비파괴시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험도기반검사(RBI) 항목을 내압시험 대체방법으로 까지 확대 인정하기는 어려움
 - * 내압시험은 배관의 건전성 확인 및 비파괴시험은 배관 용접접합부에 대한 결함 확인
 - 다만, 위험도기반검사(RBI)을 통한 두께 측정 등 적용가능 대안을 검토할 예정임

□ 향후계획

- 검사기관·전문가 등 자문회의 및 현장조사(~'23.3)
- 두께측정 등 대안의 적용가능성 검토(~'23.상)

18.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선 추진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물질 정책과	신건일 과장	044-201-6770
		강미진 수석전문관	044-201-6784

□ 제도현황

- (현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기준에 해당하면 유독물질로 지정되나,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 (문제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정(15.1.1) 이후 유독물질 지정을 검토 및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해당물질과 관련된 업계가 지정 제외 의견을 개진하여도, 해당 규정에 따라 유독물질 지정이 제외된 사례가 없음.
- (정책대상) 유독물질 취급자
- (근거법령)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 및 제20조

□ 건의내용

- 현행 법상 화학물질의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적극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지정 제외 필요

□ 검토의견 (수정 수용)

- 유독물질은 취급·사용하는 용도와 관계없이 물질 자체의 인체·환경 유해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해당 물질 취급시 외부 유·누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는 필요.

○ 다만, 유독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의무를 차등화하는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

-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용역(‘22.3~8월, 인하대학교)을 토대로 민·산·관 토론*을 거쳐 개편안 마련(‘22.12월)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예정(‘23.하)

* ‘21.5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토론 및 의견수렴

□ 향후계획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추진(‘23.하)

19. 신규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물질 정책과	신건일 과장	044-201-6770
		이주현 사무관	044-201-6783

□ 제도현황

- (현황)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등록
- (문제점) EU, 일본, 중국, 미국 등과 비교시 화평법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엄격함
 - * (EU·일본·중국) 1톤/연 ↑, (미국) 10톤/연 ↑
- (정책대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등
- (근거법령) 화평법 제10조

□ 건의내용

- 신규화학물질, 국제기준으로 등록대상 완화(연간 0.1톤 → 1톤)
 - (현행) 0.1톤 이상 : 등록 → (개정) 1톤 이상 : 등록 / 1톤 미만 : 신고

□ 검토의견 (기 추진중)

-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2021년 5월~)’ 논의를 통해 유럽연합(EU) 제도에 기반한 등록·신고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3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마련 예정
 - * ▲유럽연합 유해성정보 신고제도에 기반한 소량신규물질 신고제도 개선, ▲정보 없는 물질 관리원칙 정립, ▲신규물질 등록기준 유럽연합 수준으로 조정(0.1t → 1t)

□ 향후계획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마련('23.하)

21. 대기개선시설의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전완 과장	044-201-6580
		김민지 사무관	044-201-6581

□ 제도현황

- (현황)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배출 규제 준수를 위한 대기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설치가 확대
- (문제점)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따라 대기오염물질(NOx 등)이 저감되나,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추가할당 근거 부재
-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

□ 건의내용

- 환경개선 투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투자·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

□ 검토의견 (증장기검토)

- 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환경법 상 의무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량 증가 시 추가할당 방안 마련
- 단, 기존대비 의무이행 과정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임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기준 마련 필요

22.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변화 정책관	기후경제과	전완 과장	044-201-6580
		김민지 사무관	044-201-6581

□ 제도현황

- (현황) 배출허용총량은 부문별 감축수단을 통한 감축분 반영
- (문제제기) 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은 산업계 감축부담 증대 및 산업계에서 감축활동을 할수록 배출허용총량이 더 작아져 업계 부담 가중
-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건의내용

- 사업장 현실 고려한 배출허용총량 설정방식 필요
 - 계획기간 할당계획 배출허용총량 설정시 산업계 감축분 미반영
 -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내 예비분 잔여량의 재할당
- ※ 예비분 잔여량 : 시장에 배출권 관련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 대비 유동성 관리 용도로 할당(배출허용량의 4~6%)

□ 검토의견 (중장기검토)

- 현재 상향된 NDC의 연도별·부문별 감축로드맵을 수립 중으로 (~23.3), 그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 방안 마련

23. 반도체 공정가스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율 기준 완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전완 과장	044-201-6580
		정상필 사무관	044-201-6595

□ 제도현황

- (현황 및 문제점) 반도체 공정에서 감축설비의 IPCC 저감효율(Tier2)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측정된 효율 값이 85% 이상이어야 하며, 효율값이 85% 미만이면 저감효율 불인정(0으로 적용)
- (정책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

□ 건의내용

- 정부 방법론(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한 감축실적 (저감효율) 인정 필요

□ 검토의견 (기시행)

- 반도체공정 저감설비의 저감효율 측정값이 85% 미만이라도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배출계수(Tier3)를 개발·사용하는 경우 저감효율 인정 가능

24. 배출저감 샘플링 규격 국제수준 변경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전완 과장	044-201-6580
		정상필 사무관	044-201-6595

□ 제도현황

- (현황 및 문제점) 전자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설비의 저감효율 산정을 위해 매년 분기 1회, 저감설비의 5%(연 20%)에 대해 시료를 샘플링 하고 효율값 측정함에 따라, 설비 신·증설시 기업부담 증가
- (정책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고시)

□ 건의내용

- 동일 업종의 해외사례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IPCC)을 참조하여 저감 효율 샘플링 규격 완화 필요(매년 20%→5%)

□ 검토의견 (수용)

-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대상을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전체 설비의 연 20% → 연 10%)

□ 향후계획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22년, 한국환경공단)

25. 정유업종 친환경 제품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녹색전환 정책과	과 장 조현수 사무관 금병욱	044-201-6678 044-201-6690

□ 제도현황

- (현황)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Taxonomy) 발표('21.12)
-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 건의내용

- (문제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친환경·저탄소화 가능한 필수 산업재인 석유제품(중온아스팔트 등)이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투자 의욕 저하를 초래
- (건의사항) 탄소중립 이행 중간단계로서 화석연료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제품(저점도 윤활유, 중온아스팔트)의 제조활동에 대해서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경제활동에 포함 요청

□ 검토의견 (중장기검토)

- (저점도 윤활유) 저점도 윤활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증빙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반영 검토
- (중온아스팔트) '중온아스팔트 제조'의 경우 "녹색부문 1-가-(6)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항목을 활용하여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다양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폭넓게 인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활동으로 기존 공정·설비의 과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내용연수×△2.4% 이상을 일시에 감축 시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

- (개념)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
- (성격) 녹색경제활동의 판단 근거 제시를 위한 자발적 지침
- (구성)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한시적 인정)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
-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며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를 기본으로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
 -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 (녹색활동 적용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충족

<적용기준 세부내용>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해당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활동**

27.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기준 완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하나라도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가 필요하며(사유 발생 시), 하나라도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제점) 전자부품 제조업과 같이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시장 환경 변화에 긴밀한 대응을 위해 생산장비의 설치 및 폐쇄가 빈번하여, 사업장에서는 잦은 변경허가·신고가 필요로 행정업무의 어려움이 존재함
- (정책대상) 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건의내용

- 총량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대상 완화
 - 총량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대상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
 - 또는 일정규모 미만의 증설·폐쇄에 대해서는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 검토의견 (수용곤란)

○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64종)의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목적인 대기환경보전법과 달리 사업장 단위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3종)을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상 허가 등은 규제의 목적, 대상, 범위 등이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은 불가

-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은 사업장 내 모든 배출시설 배출량의 합*을 기준으로 관리 대상이 정해짐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 배출시설의 증설·폐쇄에 따라서도 총량관리사업장에 편입 또는 제외될 수 있는 등 일률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4톤/연 이상, 먼지: 0.2톤/연 이상

<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 비교 >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농도규제)	대기관리권역법(대기총량제)
규제 대상	▶ 개별 배출시설	▶ 사업장
관리 물질	▶ 대기오염물질 64종	▶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3종
오염물질 관리방법	▶ 시설별 농도 규제(배출허용기준)	▶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규제(할당량)
변경허가·신고 대상	(변경허가) 1.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외
	(변경신고)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 2. 허가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3. 방지시설 증설·교체 또는 폐쇄 4.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변경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 7. 그 밖의 허가증 허가사항 및 일일 작업시간 변경	(변경신고) 상호명 변경, 대표자 변경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28. 배경농도가 있는 특정대기오염물질(아세트알데히드)의 연간 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 관리과	임충목 서기관	044-201-6905
		강동균 주무관	044-201-6906

□ 제도현황

- (현황)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문제점) 반도체 제조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아세트알데히드) 발생*에 따른 입지규제로 시설 증설 어려움 예상
 - * 자가측정 결과 아세트알데히드 배출량이 3톤 이상으로 산정됨
 - 반도체 생산 공정 중 에탄올류를 사용하는 세정과정을 거쳐 아세트알데히드가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에탄올 사용과 무관하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
 - * 에탄올 계열의 물질이 공기 중에서 산화 시 생성되며, 공정과 무관한 사업장 주변 대기 측정 결과 검출한계 이상으로 검출 확인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건의내용

- 반도체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아세트알데히드 검출한계를 특정 농도(산업단지 배경농도 등) 이상으로 조정

□ 검토의견 (수용곤란)

- 제조공정 시 에탄올류를 사용하는 등 아세트알데히드 발생 개연성*이 존재하고, 자가측정 결과 아세트알데히드가 실제로 검출되므로 인·허가 및 배출량 산정 등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함
 - * 다수의 증착(피막처리) 및 식각(부분제거)공정 시 에탄올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산화하여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생될 수 있음
-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 물질의 전체 배출량이 많음에도, 배출농도가 주변환경과 유사한 수준(미량)이라 하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을 두는 것은 관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 인체 유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농도·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 부실 등 부작용 초래

29. 비산배출시설 자체개선계획 제도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서수영	044-201-6914
		이완기	044-201-6904

□ 제도현황

- (현황) 정유업종에서 다수의 육상출하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유증기 회수시설인 VRU (Vapor Recovery Unit)는 비산배출시설 및 대기 오염배출시설의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로서 운영 중
- (문제점) VRU 흡착제 교체 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위해 육상출하시설도 가동중지해야 함에 따라 생산차질 발생
 - * VRU 흡착제 교체 : 7~8년 주기로 교체, 7~10일간의 시일 소요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1.가.4)

□ 건의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방지시설 개선·변경·점검·보수 시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 준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있으나 비산배출 시설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관련 규정 명문화

□ 검토의견 (수용)

- 비산배출시설에 대해 천재지변, 단전, 화재 등으로 인한 비정상가동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 준수기준을 유예하는 규정은 있음
 - *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21.12, 환경부)
- 다만, 천재지변, 단전 등 유예 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 고장, 정비 등으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체개선계획서 제출을 통한 시설기준 적용 유예 규정 보완 예정

□ 향후계획

-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래이스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방안 논의('22.7~12)

30.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의 TOC 측정 규제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서수영	044-201-6914
		이완기	044-201-6904

□ 제도현황

- (현황) 냉각탑의 냉각수 TOC 농도는 50ppm 이하 관리, 열교환기는 입구 대비 출구 TOC 농도편차를 1ppm 미만 또는 10%미만 관리
- (문제점) 농도편차 관리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기오차 등에 따른 분석값 차이 반영하기 힘들, 1ppm 미만 관리에 담당자 업무 과중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3. 가. 1)공정배출시설 마)

□ 건의내용(한국경총/대한상의/한국석유화학협회)

-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의 입출구 농도편차 측정 항목 제외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3.가.마)(2) 삭제
- 제외가 불가능 하다면 동일한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들은 출구 시료 또한 냉각탑 유입 시 시료 1개로 같음할 수 있도록 개선 및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 기준 완화

□ 검토의견 (증장기 검토)

-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가, 마모, 파손될 경우 냉각수로 공정내 유기물질이 누출되어 유기물질이 대기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유기탄소 규정을 두고 있음
 - 저농도 및 고농도 구간의 측정편차를 고려하여 1ppm 또는 10% 미만으로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유기물질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교환기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필요
 - 다만,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임에 따라 유사사례, 오염개연성의 조사 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검토 예정
- 참고로, 현장의 애로사항 및 여건을 반영하여 열교환기의 농도편차가 1ppm 및 10%를 초과하는 경우 45일내 조치하고 30일내 재측정 하도록 하고 있음

31. 총량사업장의 개별배출구 농도규제 완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대기관리권역법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 수도권대기법에서 인정하던 농도 특례가 3종 사업장으로 축소*
* 130%까지 농도규제 완화: 수도권법(1~3종) → 권역법(3종) 사업장
- (문제점) 연도별 할당량 충족을 위해 배출량 비중이 큰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 비중이 낮은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농도규제까지 준수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요구됨
- (정책대상) 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

[대기관리권역법]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

□ 건의내용

- 농도특례를 확대 시행하더라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에 따라 수도권대기법과 같이 1~3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특례 확대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위해 수도권법보다 농도특례 대상을 축소·조정
- 다만, 농도특례 등 총량관리사업장의 특례인정 범위는 총량제 이행현황 등을 고려,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
 - '21년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의 할당대비 배출량 비율은 각각 67.3%, 56.3% 수준으로 특례범위 확대 필요성은 낮은 상황
 - 향후 새정부 미세먼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장의 감축수준 등을 고려해 특례인정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

32. 송유관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요율 체계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 보건국	환경피해 구제과	이은혜 사무관	044-201-6813

□ 제도현황

- (현황) 송유관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계약시에는 각 계약 개별로 해외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과거 사고내역이 위험률에 반영되므로 사고 발생시 요율 할증
 - 송유관 사업자는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과도하게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과 보험료 인하를 지속 요구
- (정책대상) 송유관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요율
-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건의내용

- 송유관 사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필요
 - ①통계요율 적용, ②사고에 대비하여 송유관 사업자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사고발생시 활용, ③보험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기본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발생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추납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중장기 검토) 환경부에서는 송유관 시설에 대한 요율 개발 필요성을 관련 관계기관(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에 지속 건의중*

* '22.2월 공문발송, ' 22.3 이메일 협의, 환경책임보험요율 TF 회의('22.1~3월) 등

- ※ 보험개발원은 송유관 시설은 지형 또는 구조물 등으로 정확한 시설현황 파악이 어려워 위험도 파악 및 통계요율 산출에 필요한 빈도심도 파악에 제약이 있으며, 또한 송유관은 구조 및 재질, 관리시스템 등에 있어 개별성이 강하므로 정형화된 통계요율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
- 송유관 사업자가 총당금을 적립하고 사고발생시 활용하는 방안이나, 손해율을 기준으로 기본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발생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추납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경부·금감원·보험개발원·대표보험사 등과 검토 추진

□ 향후계획

- (요율 개선 추진) 국내 실정에 맞는 요율개발을 위해 송유관시설 등 요율미비시설에 대한 요율 책정방안 연구* 추진중

* 해외 사고사례 및 피해규모 조사를 통한 손해액 추정 및 해외 보험요율체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제안 예정(' 22.8~)

33. 총량제, 미량 배출시설의 총량대상 제외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총량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배출량 기준(NO_x/SO_x의 경우 4톤)만 있고,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은 없음
- (문제점) 유량이 매우 적거나 배출농도가 매우 미량인 배출량이 잡히지 않는 소규모 배출시설도 모두 총량 설치허가 대상에 포함, 불필요하게 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나게 됨
- (정책대상) 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 건의내용

- 배출구 기준 연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총량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 * 예시) 연 배출량 10kg 미만(=0.01톤 미만)

□ 검토의견 (수용곤란)

- 대기총량관리제는 기존 배출시설 단위의 관리 체계를 보완, 사업장 전체*의 배출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농도 규제와 차별화 됨

* 질소산화물(4톤/연 이상), 황산화물(4톤/연 이상), 미세먼지(0.2톤/연 이상)

- 일정규모 미만 소량 배출시설을 사업장 전체의 배출량 산정 시 제외할 경우, 개개의 배출시설 배출량은 소량이나 사업장 전체의 배출량은 많은 저농도 다배출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 곤란

- 다만, 총량관리사업장 내 소량 배출구는 TMS 부착대상 제외*, 자가측정 주기 차등적용 등으로 사업장 부담을 완화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3) 연간 질소산화물·황산화물 3톤 및 먼지 0.15톤 이하

34. 방지시설 의무가동 예외 조항 추가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 관리과	임충묵 서기관	044-201-6905
		강동균 주무관	044-201-6906

□ 제도현황

-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돌발적인 고장 등 발생시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비 가능
- **(문제점)** 담당 지자체의 보수적인 유권해석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발생
 - 운전중인 배출시설을 가동중지 후 정비하거나 혹은 Stand-by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방지시설 운전이 가도록 요구되는 현실임
 - 방지시설 없이도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Stand-by 방지시설 추가 투자는 과도한 부담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1호(개선계획서의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건의내용

○ 다음 조건에서 방지시설 의무 가동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조건1)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함께 가동 정지가 필요하며, 방지시설 가동 없이도 배출허용준수 가능한 경우
- (조건2) 공정 개선으로 인해 기설치된 방지시설 미가동 하여도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

□ 검토의견

<조건 1 관련> : 수정수용

- 현행 법령은 방지시설 보수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이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가동없이도 배출시설 운전 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1호),
 - 이때 관할기관은 자체개선계획의 필요성 등 엄격한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음(자체개선계획 기간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예외 인정)
- 건의내용은 관할기관이 자체개선계획 승인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의 하나로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개정하여 개선계획서 수리요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설 개선절차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계획임

<조건 2 관련> : 기반영

-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 ①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아울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제정(21.11월) 하는 등 일관된 방지시설 면제 세부기준 적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 바 있음

35. 권역간 배출허용총량 거래허용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이전(거래) 범위를 동일물질, 동일연도, 동일한 권역으로 제한
- (문제점) 인접 권역에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효율적 배출량 저감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 1개의 사업장에서 설비 투자를 통해 배출허용총량 여유가 발생했더라도 타 권역 사업장에 이전이 불가, 과징금 납부사례 발생
- (정책대상) 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 건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대기질 환경에 상관성이 높은 인접 권역간 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 검토의견 (수용곤란)

○ 대기관리권역 지정 취지 및 권역관리 기본원칙 훼손

- '19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산단 등 미세먼지 우심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권역 관리체계로 전환('19.4)

* 미세먼지 기여율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도, 기상여건 등을 고려해 4개권역 지정

- 권역 관리의 핵심은 '권역단위* 맞춤형 오염물질 관리'로 특정 지역의 오염원 집중 방지를 위해 이전 범위를 엄격히 제한

* 대기관리권역설정, 권역별 대기개선목표 및 배출허용총량 설정,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설치 등

- 권역간 거래로 대기오염물질이 他 권역으로 이동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특정 지역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대기개선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 '인접권역' 사업장간 배출권 거래는 '인접'의 정의설정, 미적용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

○ 다만, 배출허용총량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차입, 상쇄 도입 등 제도 개선(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환노위 제출, '21.12)을 통해 총량제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

<< 참고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주요내용) >>

○ (법안개요)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1.12.17

○ (주요내용)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예비분 근거 마련, 배출허용총량 차입 및 외부 대기오염물질 감축활동에 대한 상쇄 인정제도 신설 등

36. 배출권거래시 부가세 면제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나,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대상물질 배출권 거래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문제점)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대상물질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와 동일한 오염물질 감축을 목적으로 제도가 설계됨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 (정책대상) 대기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 건의내용

- 조특법상 총량관리대상물질 배출권 거래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토록 개선
 -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에 총량관리대상물질 배출권의 부가세 면제 조항 신설

□ 검토의견 (수용)

- 유사한 배출권 거래 제도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처럼 대기총량제 배출권 거래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향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부 소관) 개정 협의('22.下)

37. 대기방지시설(흡착탑) 활성탄 교체주기 연장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 기	임충목 서기관	044-201-6905
	관리과	강동균 주무관	044-201-6906

□ 제도현황

- (현황 및 문제점) 대기 인·허가증에 명시된 활성탄 교체주기*가 필요 이상으로 짧아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 *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교체주기가 기재된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방지시설 적정관리 유도 등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음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

□ 건의내용

- 활성탄 연장 사용에 대한 관련 근거*를 보유한 경우, 활성탄 교체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신설 필요
 - ※ 예시 : 자가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50% 미만 확인 및 활성탄 요오드가 분석결과 양호

□ 검토의견 (수용곤란)

- 인허가 이후 개별 배출시설 활성탄 등 소모품 등 교체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률적 규범화는 기술적으로 곤란함
- 다만, 원료·연료 사용량 변경, 조업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활성탄 교체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의 검토를 받아 변경 신고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 변경신고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8. 4·5종 대기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유예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 관리과	임충목 서기관	044-201-6905
		강동균 주무관	044-201-6906

□ 제도현황

- **(현황)** 4·5종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 신규 4종 사업장 : '23.6.30까지 / 신규 5종 사업장 : '24.6.30까지 / 기존 4·5종 사업장 : '25.6.30까지 부착 필요
- **(문제점)**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미제시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 9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세정집진시설(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여과집진시설(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전기집진시설(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흡수에 의한 시설(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흡착에 의한 시설(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건의내용

- 4·5종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교육 및 홍보(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및 지자체별 교육 활용)
- 정부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조건 등을 사업장별로 배포

□ 검토의견 (수용)

-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단계적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교육·홍보를 시행 중이며,
 - 앞으로도 현장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일선 사업장에서 시행 준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 환경부 차원의 부착사업장 대상 설명회, 홍보물(리플릿) 배포 등
- 아울러, '22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 ※ '22년 예산에 부착지원금 40억원 편성(설치비 약 400만원 90% 지원)

39. 배출허용총량 권역별 할당량 재검토 등 제도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총량관리사업자는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받게 되는데, 여건 변동(사업장·설비 신설 및 변경) 발생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받아야 하는 경우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문제점) 1차 기본계획 수립시 신·증설 계획 반영 등 기초조사 누락에 따른 지역배출허용 총량 산정으로 현 상황과 괴리 발생
- (정책대상) 대기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16조, 제17조

[대기관리권역법]

제16조(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 건의내용

- (건의 1) 국가 및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한 근거법령 및 세부 규정 마련 요청 (현실화)
- (건의 2) 기존 총량관리사업장 기초조사 누락분 반영 및 현 산업계 상황(사업장·설비 신설 및 변경 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권역별 배출허용총량 수정 및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 검토의견 (수용)

○ (건의1에 대해) (수용)

-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할당 조정(추가, 취소)이 가능하도록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추진

* 사업장총량제 이행 지원을 위해 '21.1월부터 구성·운영 중(위원: 환경부, 산업부, 5대협회, 전문가 등)으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예비분 근거마련, 차입, 상쇄제도 신설 등

○ (건의2에 대해) (수용)

- 권역별 할당량, 배출량 과부족 등 총량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 '21년 할당대비 배출량 비율은 질소산화물 67.3%, 황산화물 56.3%로 여유

□ 향후계획

- 개정안 국회통과 지원 및 하위법령 마련: '22.下~
- 총량관리사업장 배출량 모니터링: 계속

40. 배출허용총량 지역·오염물질 제한 해제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대기환경 정책관	대기관리과	최재웅 서기관	044-201-6902
		이현민 주무관	044-201-6908

□ 제도현황

- **(현황)**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도별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지속적으로 삭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배출량 저감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높음
- **(문제점)** 사업자 간 배출허용총량 이전은 동일 오염물질별로만 가능하며, 사업장 별 특성에 따라 이전·구매가 필요한 물질이 달라 배출권 거래 애로, 또한 배출허용총량 이월 제한으로 배출량 저감 의욕 저하 우려
- **(정책대상)** 대기총량관리사업장
-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1조

[대기관리권역법]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2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①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

$$\text{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times 0.1 \times (\text{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div \text{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

- 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건의내용

- 대기관리권역 및 오염물질 간 교차 이전·매매 가능토록 규제 완화
- 사용하지 않은 잔여 할당을 다음 연도에 이월 시 전량 이월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건의1에 대해) (수용곤란)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질소산화물 등 7종의 관리 대상 대기오염물질은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개선 목표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 저감 사업을 추진 중
- 오염물질별 대기개선 목표는 대기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오염물질별 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조건에서 최종 최종 대기개선 목표의 달성도 가능

○ (건의2에 대해) (수용곤란)

- 사업장의 이월량은 연차별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권역 내 이월량이 과다*할 경우 산식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할당량을 조정하고 있음

* 권역별 잔여량의 합이 차년도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의 10% 초과할 경우

- 잔여량을 모두 이월할 경우 개별 사업장 뿐 아니라 권역 전체의 차기연도 배출허용총량이 이전 연도를 초과, 권역 대기개선 목표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외국*도 동일한 산식에 따라 할당량을 삭감

* 美(NOx Budget Program)도 권역 총량의 10%를 기준으로 삭감산식 적용

41.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물환경 정책국	수질 관리과	임옥상 사무관	044-201-7071

□ 제도현황

- (현황)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 (문제점)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지도·점검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개선 필요
 - *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60~100만원), 행정처분(경고~조업정지 10일)
- (정책대상) 폐수배출시설
-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건의내용

-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지도·점검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3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 검토의견 (수용)

- 자가측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료 변경없이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견시 일정 기한내에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22.7)을 거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2.12)

42. 계획관리지역 내 제지업종 수질배출허용기준 오류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물환경 정책국	수질 관리과	전은혜 사무관	044-201-7075

□ 제도현황

- (현황)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 기준 적용
-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물환경보전법」에 준용하면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가나지역→특례지역) 적용 ⇒ 적용 대상 논란

<「물환경보전법」 개정 경과>

- ▶ ('05.9월) 관리지역 내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업종 제한) 됨에 따라,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별공장에 기준 적용
- ▶ ('10.4월)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 외 관리지역 내 공장(업종 제한 폐지)에 기준 적용
- ▶ ('19.10월) 관리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에 기준 적용

- (정책대상) 계획관리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 * (입주제한) 1~4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사업장(단, 인쇄·출판/사진처리시설로서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가능) 등
- (근거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가목2) 비고 2

□ 건의내용

- 특례지역 기준 적용 대상에서 기존에 입지한 제지업종 제외
 - 규정 신설 시 입법 취지에 따라 '05.9월 이후 신설된 소규모 공장(1만㎡ 미만)만을 대상으로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필요

□ 검토의견

- 규정 신설('05.9월) 이전 입주공장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 <조문> 단서조항 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나, 최초 입법 취지 상에만 신설되는 개별공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 향후계획 (수용)

- 법률자문* 의뢰 및 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 (주요내용) ① 문헌적 해석, ② 기득권 인정 여부, ③ 소급적용 가능 여부 등
 - ⇒ (1案)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적용 예외가 가능할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적용 대상 명확화
 - ⇒ (2案) 기존 입주공장에 대한 적용 예외가 불가할 경우, 합리적 규제 방안 등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 검토

43. 옥상 알카리 배기 중화목적 황산 재활용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	044-201-7380
		민영우 사무관	044-201-7393

□ 제도현황

- (현황) 반도체 메인 공정 중 하나인 세정공정은 웨이퍼 표면 잔류물 제거를 위해 황산을 별도탱크에 저장
- (문제점) 사용 후 폐황산의 일부를 대기방지시설의 알카리성 대기 오염물질을 중화처리 하기 위한 약품으로 재사용 하려고 해도 재활용 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가 불가능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별표 4의3]

□ 건의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규정상 황산에 대한 재활용 가능 유형에 (R-1-1)원형 재사용 방법 추가 필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폐황산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 필요
- 폐황산은 폐기물의 유해특성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특성(폭발성,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는 물질로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폐황산의 경우, 개별 사업 공정 특성에 따라 폐황산의 특성과 타 성분과 혼합비율이 달라지고, 그 특성에 따라 재활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각 사업장별 폐황산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성평가를 통하여 재활용은 가능할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 공통의 재활용 허용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4. 폐기물 분석기관 외 연구, 거래목적 샘플 반출 허용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폐자원 관리과	이정미 과 장	044-201-7360
		배기철 사무관	044-201-7371

□ 제도현황

- (현황) 현행 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은 환경부가 지정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만 가능
- (문제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에게 폐기물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①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 하기 전 배출하는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처리업체가 직접 분석해야 하는 경우
 - ② 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간 연구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처리업체가 시험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 건의내용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필요

□ 검토의견 (기시행)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에 의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음

45.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관련 예외조항 마련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이정미 과 장	044-201-7360
		박재근 사무관	044-201-7367

□ 제도현황

- (현황) 현행 규정 상 지정폐기물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종류별로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각각 45일과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

* ①폐기물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③1년간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3톤 미만인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보관

** (45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축매 등, (60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

- (문제점) 신규 지정폐기물 발생 시 폐기물 시험·분석, 처리업체 확인·계약, 인·허가 절차* 등을 45일 내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 폐기물분석(3주), 처리가능 업체 발굴확인(3주), 계약(3주), 인허가(2주) 등에 11주(77일) 소요

□ 건의내용

- 사업장에서 신규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既 계약 처리업체에서 해당 폐기물 처리가 불가한 경우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관련 예외규정 마련

□ 검토의견 (기시행)

-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위해성이 높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 신규 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폐기물 분석 및 폐기물 분류코드 확정 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는 등 45일 내 배출에는 무리가 없음

- 또한 既 계약 처리업체에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46. 국가목표 내 사업장 자원순환 목표 할당 요청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자원순환 정책과	이지선 사무관	044-201-7347

□ 제도현황

- (현황) 국가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달성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별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추진 중(18년~)

* 사업장폐기물 '27년 목표 : 순환이용률 83.1%, 최종처분율 3.2%

**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사업장일반폐기물 1,000톤 이상

- 목표 미달성시 다음연도 이행명령, 이행명령 미이행 시 명단공개 등 조치

- (문제점)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자원순환 목표는 직전 3개년 실적인 '기준실적' 대비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나, '기준실적' '27년 국가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해당 실적을 유지하도록 설정
- (정책대상) 폐기물 다량 배출자(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 (근거법령)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 건의내용

- 사업장 목표는 '27년 국가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당 필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53호, 2019.3.19.)(이하 '고시)」 [별표 2]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목표는 국가 자원순환목표, 업종별·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자원순환실적, 자원순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목표의 평균이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전체 성과관리대상자가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각각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목표는 연차별 국가 자원순환목표 증감률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이하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여 설정함.
- 다만, 성과관리대상자가 국가 자원순환목표("27년)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목표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나 추가 비용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실적을 유지하는 목표를 설정함
- 기준실적이 국가 자원순환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별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폐기물 종류별, 자원순환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로 실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준실적보다 상향된 목표를 차등적으로 설정함
- 기준실적이 국가 자원순환목표("27년) 이상인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자원순환목표로 목표를 설정한다면, 기준실적 수준의 실적 달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성과관리대상자가 과도한 목표 이행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미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 미달부분을 국가 자원순환목표 ("27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이행명령* 할 수 있음
 -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고시 제20조제2항
- 이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목표가 국가 자원순환목표("27년)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 시 이행명령 등의 별도의 조치 사항이 없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47.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 국	자원순환 정책과	서영태 과 장 강지연 사무관	044-201-7340 044-201-7349

□ 제도현황

- (현황)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준수 필요
- (문제점)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획일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 가중
- (정책대상)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66조 등

□ 건의내용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개정 이전과 같이 사례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 검토의견 (중장기 검토)

- 불법폐기물 유발행위 억제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강화(과태료 또는 벌칙 → 벌칙, '20.5 개정)
- 지속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발생('20년 8.1만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 중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및 주변 환경오염 영향이 미미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 후, 처벌기준 세분화(완화)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폐기물관리법 처벌 기준 세분화 필요 시, 법령 개정 추진

48. 고행연료사용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폐자원 에너지과	홍경진 과장	044-201-7400
		조영훈 사무관	044-201-7408

□ 제도현황

- (현황)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9]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검사기준 제1호 사목>
 사. 고행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행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 정기검사(연 1회)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 이행시까지 해당 시설에서 고행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할 수 없음
- (정책대상)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근거법령)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 건의내용

-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중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사용중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선명령만 처분
-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의 행정처분 기준도 악취방지법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개선 필요
- 제품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사용시설의 개선조치에 한계가 있어 사용시설의 사용중지 처분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부담만 발생

□ 검토의견 (수용곤란)

- 고행연료제품은 가연성 고행폐기물로 제조한 재활용제품으로 LNG 등의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며, 주로 LN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음
- LNG 등은 사용과정에서 악취를 배출하지 않으나, 고행연료제품은 폐기물로 제조하여 사용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거지 인근에 위치 가능한 시설의 연료로 사용되어 엄격한 악취관리가 필요함
- 한편, '21년 기준 악취로 개선명령을 받은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은 활성탄 교체, 약품 투입, 악취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 후 모든 시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중에 있음

49. 방류수 불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규제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통합허가 제도과	이장원 과 장	044-201-6715
		변상윤 사무관	044-201-6717

□ 제도현황

- **(현황)** 방류수 불소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3mg/L, 그 외 '가', '나' 및 '특례'지역은 15mg/L
 - 환경오염시설법상 최대배출기준*은 15mg/L로 물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과 같음
 - 다만, 사업장의 배출로 인해 하천 총오염도가 정책기본법상 환경 기준 초과시 한계배출기준(물환경법상 청정지역 기준인 3mg/L)이 적용
- **(문제점)** 그간 물환경법상 불소 15mg/L 기준이 적용되다가 통합법 시행으로 갑자기 3mg/L로 과도하게 강화
 - 신규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사업장 입지 여건상 부지확보가 곤란하고 공정 변경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초래

물환경보전법	한통법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불소 배출허용기준 : 가/나/특례지역 (15mg/L), 청정지역 (3mg/L)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 불소 한계배출기준 : 3mg/L

- **(정책대상)** 반도체 사업장 50개소(기존 44개소, 신설 약 6개)
-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및 「한계배출기준 고시」

□ 건의내용

- '24년 이후 설치된 신규 사업장에만 강화된 기준(3mg/L)을 적용하고, 기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현재의 배출허용기준(15mg/L) 적용을 유지

□ 검토의견 (대안제시)

- '17년 이후 업종별 유예기간에 따라 7개 업종에 대한 통합허가가 현행 배출기준 적용하에 완료된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배출기준에 대해서만 변경할 수는 없음(업종간 형평성 저해)
- 다만, 현행 수질오염물질의 '한계배출기준'이 대기오염물질의 기준에 비해 강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정성 및 개선 필요성 검토 필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최대배출기준의 70%	한계배출기준의 70%	청정지역 기준	청정지역 기준의 70%

* 수질분야 배출영향분석 및 한계배출기준 개선연구 예정('22.8 - '23.상)

- 연구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산업계와 사전 숙의 후 제도개선 추진('23년 내)

□ 향후계획

- '22. 8 : 수질분야 한계배출기준 및 배출영향분석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연구(~'23상)
- '23 상 : 하위법령 및 한계배출기준 고시 개정 검토(~'23하)

50. PVC(폴리염화비닐)랩 전면금지 적용유예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자원순환 정책과	서영태 과장	044-201-7340
		임양석 사무관	044-201-1354

□ 제도현황

- (현황) PVC재질 첩합·수축포장,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금지
 - * 다만, 냉동제품 포장 및 EPR 제도 대상업체 중 연매출 10억원이하(수입 3억원이하)인 업체는 축·수산물 포장에 PVC랩 사용 가능
- (문제점) 대체 포장재 성능 미비, PVC랩 산업 폐업 우려 등
- (정책대상) PVC 및 PO 식품용 랩 생산자
-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건의내용

- 현행 기준 유지 및 최근 입법예고안(PVC랩 전면금지) 적용유예

□ 검토의견 (수용)

- 대체기술* 수준 및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유예
 - * 삼영화학 등 2社에서 PO랩 제조 중

□ 향후계획

- 대체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PO랩 확보
- PVC 랩 제조업체의 품목전환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 * '23년 예산으로 "자원순환 적응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197억원 요구 중

□ 개정안 마련

- 포장재 재질·구조기준 사전 검토, 개정안 마련('21.11) 및 의견조회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1차 건의('21.11.30)
 - * 축·수산물 포장용 PVC랩의 예외적 허용을 현행대로 2년 연장 및 PVC 재 활용 R&D 개발 건의
- 포장규칙 개정계획 내부결재('22.1.20)
 -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계획 보고

□ 보도 및 업계관련

-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보도자료에 PVC랩 전면규제 내용 보도('22.1.24)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2차 건의('22.2.15)

- ▶ PVC랩 전면 금지 시 PVC랩 업계 폐업, 실직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우려되므로 전면 사용금지 방침 재고를 건의함
- ▶ PVC랩이 재활용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을 건의함

- PVC 식품용 랩 생산업체 면담 및 건의서 접수('22.3.29)
 - * 차별적 정책으로 중소제조정배 폐업 위기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식품용랩 사용 대형마트 설문결과 제출('22.3.29)
 - * (설문결과)방담성, 점착력 저하 및 제품 신선도가 떨어지는 문제 발생
- PVC 식품용 랩 전문금지 제도(안) 관련 박대출의원실 보고('22.3.30)
- PVC 식품용 랩 순환이용성 평가 및 R&D 현황 보고('22.4.4)
 - * PO랩 사용성능 현장 평가결과 PVC 랩 대비 86% 성능으로 평가
- 한국바이닐환경협회 PVC랩 및 PO랩 실증실험 결과 제출
 - * 용기 부착력 시험결과 PO랩의 성능이 떨어지는 사항 확인
-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R&D 기술·정책활용 협의체 개최('22.4.22)
 - * PO랩 R&D 결과발표 및 관련업계 소개 등 추진
- 업계와 지속 협의·검토 중

참고 2

PVC 식품용랩 규제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근거	환경부령	고시	환경부령으로 통합
적용 범위	포장재 전체	EPR 제품	포장재 전체
내용	1. 허용외 PVC 첩합·수축·코팅 포장재 사용 제한 2. PVC 포장재(PVC 100%) 사용 제한 (계란류, 김밥 등 간편식에 한정)	허용외 사용금지	허용외 사용금지 → 허용대상 축소
허용 품목	1. 석유제품용 2. 의약품용 3. 동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6. 계란류, 간편식 외 품목의 PVC 포장 (PVC 100%)	1. 제품 금속재질 마개 안쪽 코팅 2. 의약(외)품 및 건강 기능식품용 수축·압박 포장 3. 상온유통 가능한 햄·소시지 4. 축수산물 포장용 랩 5. 식용유지류 압박포장	1. 제품 금속재질 마개 안쪽 코팅 2. 의약(외)품 및 건강 기능식품용 압박포장 3. 상온유통 가능한 햄·소시지 4. 축산물 수축포장 * 유예기간 2년

참고 3

국가별 PVC 규제 현황

국가	내용	비고(출처)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등을 활용한 식품포장 및 도구*는 향후 일회용품 금지 품목에 포함될 수 있음 * 테이크아웃 용기 및 뚜껑, 접시, 그릇 및 컵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registry/plastics-proposed-integrated-management-approach.htm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포장 라벨 단계적 사용 중단('22.12)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국가계획 발표('21.3.4) 	한국폐기물협회 -국외자원순환소식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및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금지 - ('22년) PVC 정육포장재 - ('25년) 모든 PVC 음식 및 음료 포장재 	한국폐기물협회 -국외자원순환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최소화법 초안 발표 - ('22년) PVC 육류트레이, 경질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포장 금지 - ('23년) 1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식기·빨대 폐지 - ('25년) 기타 모든 PVC 식음료 포장과 폴리스티렌 식음료 포장 폐지 	https://www.packaginglaw.com/news/new-zealand-and-australia-phase-out-numerous-plastic-products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후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폐기물 법안 채택 	염소계 합성수지 포장 규제개선 및 측정방법 표준화 연구(환경부)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후 음식물을 싸는 모든 PVC 호일에 kg 당 12kr(약 2달러/kg) 세금 부과 법안 발효 ※ 2001년 4월부터 세금 부과 예정 	염소계 합성수지 포장 규제개선 및 측정방법 표준화 연구(환경부, 2013)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를 이용한 식품, 음료, 주류, 의약품 등의 포장용기 또는 식기류 제품 등의 취급금지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22.11월 시행예정) 	kotra 해외시장 뉴스

51. 대기/수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및 가동개시 절차 변경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통합허가 제도과	이장원 과 장	044-201-6715
		변상윤 사무관	044-201-6717

□ 제도현황

- (현황) 대기배출시설 10% 이상 증설·교체·폐쇄 및 폐수배출시설 증설·폐쇄시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사전 변경신고' 필요
- (문제점) 변경신고에 소요되는 기간(15일) 및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 확인 진행으로 인해 적합 판정 전까지 설비가동 불가능
 - 이에 따른 설비가동 지연 및 생산 차질 발생 우려
- (정책대상) 통합관리사업장(약 1,300여개社)

	['17-'20]	['18-'21]	['19-'22]	['20-'23]	['21-'24]
사업장	284개	238개	153개	142개	518개
업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철강·비철 합성고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알콜음료, 반도체, 도축 자동차부품

-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 3(변경신고의 대상)

□ 건의내용

- 신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동일한 종류의 대기배출 시설이 10% 이상 증설, 교체, 폐쇄시 설비 우선 가동 또는 폐쇄 후 90일 이내 변경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사후신고)
- 사전신고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의미 하는 바가 증설*이 아닌, 신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폐수 배출시설 추가 및 일부 폐쇄할 경우”의 폐수배출시설 판단기준은 제2조 정의에 따라 공정단위 배출시설로 판단하도록 문구 명확화

*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중인 배출시설등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등을 추가로 설치 또는 그 규모를 늘리는 것

**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중인 배출시설등과 다른 종류의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또한 반도체 업종 및 기존에 허가받은 동일한 종류의 대기배출시설이 매일 반복적으로 증설·폐쇄되는 업종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을 사후신고로 변경하고,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변경신고를 우선 가동 후 사후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가동개시는 변경신고와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검토의견 (기시행)

- 사전 변경신고 대상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허가조건에 동일한 준수사항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현재도 '사후 변경신고' 가능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3 2호 사목

52. 환통법 허가조건 기준 명확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통합허가 제도과	이장원 과 장 변상윤 사무관	044-201-6715 044-201-6717

□ 제도현황

- (현황) 통합허가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3항)
- (문제점) 통합환경허가에 부여할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경영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
 - ※ 과도한 허가조건 부여 예시
 - ① 허가배출기준을 준수 함에도 추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요구
 - ② 관련법(환통법, 대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외 자동측정기기 추가부착 요구
- (정책대상) 통합관리사업장(약 1,300여개社)

	['17-'20]	['18-'21]	['19-'22]	['20-'23]	['21-'24]
사업장	284개	238개	153개	142개	518개
업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철강·비철 합성고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알콜음료, 반도체, 도축 자동차부품

-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3항

□ 건의내용

- 허가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개선기간 등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목적과 실행방법이 확실하나 추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가조건 부여토록 범위 한정 필요

□ 검토의견 (수용곤란)

- 현재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 아울러, 사업장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허가조건 변경 요청 가능

53. 환통법 사후 배출시설 운영 기록·보존 항목 명확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통합허가	이장원 과 장	044-201-6715
	제도과	변상윤 사무관	044-201-6717

□ 제도현황

- (현황) 통합허가 완료 후 법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문제점) 개별법상 허가시에는 배출시설 가동시간과 방지시설 운영사항만 입력하여 관리
 - 반면, 환경오염시설법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사항을 모두 입력하여 과도한 행정업무 발생 및 배출시설별 연·원료, 용수, 전력사용량 확인이 불가능(건물 단위 확인 가능)
- * (예시) 반도체 생산장비 약 2만대의 세부운영사항을 일별로 입력 및 관리 불가
통합허가시스템 보안문제(해킹 등)발생시
- (정책대상) 통합관리사업장(약 1,300여개社)

	['17-'20]	['18-'21]	['19-'22]	['20-'23]	['21-'24]
사업장	284개	238개	153개	142개	518개
업종	발전 증기공급 소각	철강·비철 합성고무 합성수지 석유화학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무기화학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 알콜음료, 반도체, 도축 자동차부품

- (근거법령) 「환경오염시설법」

□ 건의내용

-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항목을 기존 대기, 수질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항목과 동일하게 하는 문구* 추가

* 제32조 1항 후단에 “단, 배출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산입력 항목은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3항, 제4항, 제5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20호 서식의 항목으로 한다.” 문구 추가

□ 검토의견 (기반영)

-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항목을 동일하게 입력토록 기 규정
 - 다만, 허가조건 이행과 관련한 사항 기록·보존 사항은 추가적으로 입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54. 토양 오염 정기검사 면제 시 수시검사 면제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물통합 정책관실	토양 지하수과	송진성 사무관	044-201-7177

□ 제도현황

- (현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정기·수시 토양오염검사 실시
- (문제점) 육안으로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고 있으나, 정기검사에 한정(경총 주장)
- (정책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 건의내용

- 누출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정기검 n 사와 더불어 수시검 사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의견 (기시행)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양 오염검사면제*의 경우 정기검사와 더불어 수시검사도 면제하고 있음
- * 관리대상시설이 콘크리트나 철제 구조물 위 등 바닥면으로부터 떨어져 설치 되어 상시 육안으로 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향후계획

- 해당없음

55. 안전진단 서류 제출범위 및 진단항목 명확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이형섭 과장	044-201-6831
		심승우 사무관	044-201-6837

□ 제도현황

- (현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후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
- (문제점) 안전진단 서류조사시 '기타 관련서류' 문구로 인한 과도한 자료 요청, 사업장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 (근거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 건의내용

- ① 안전진단시 제출서류·범위 명확화,
- ② 검사기관과 사전 비밀유지협약 체결 건의

□ 검토의견 (①수용곤란, ②기시행)

① 안전진단 '기타 관련서류' 명확화 (수용곤란)

- 안전진단 시 모든 자료를 획일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사업장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유지 필요
- 선택항목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유사 안전진단 관련 제도*에서도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입법례)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 안전진단 시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도록 검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주지시키겠음

* 환경부-검사기관 정례회의('22.8.30.) 시 3개 검사기관에 해당사항 시달

② 안전진단 시 검사기관 비밀유지협약 체결 (기시행_대안적용)

- 취급시설 검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3곳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처벌 또는 징계받도록 기초치되어 있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56. (타부처)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가산분 대상에서 개선명령 제외

부처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류병욱 사무관	044-205-3816

□ 부처 검토의견

1. 개념

-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폐수 및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대상으로 함

관련 지방세법령 조문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중 발취: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2. 검토의견: 신중검토

-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개선명령*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음
 - * 「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개선명령)
- 또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행위는 해당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연면적 세율 증가는 타당함

57. 대기 TMS 운영 관리 기준의 합리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녹색기술 개발과	과 장 김명환	044-201-6660
		사무관 정윤희	044-201-6671

□ 제도현황

- (현황)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함
※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제점) ①업체별로 측정기기가 상이 ②업체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에서 측정기기의 내구연한 미설정* ③측정기기의 고장 발생시까지 기기를 사용하므로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에 맞게 유지가 어려움 ④정도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정확한 측정기기의 상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내구연한 존재 시 타업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인식
- (정책대상)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 사용자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 및 제11조

□ 건의내용

- 굴뚝 자동 측정기기 형식승인 시 해당 기기의 내구 연한을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 측정기기 정도검사 후 부적합 발생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측정기기 오류사항 조치 후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 검토의견 (기수용)

- 측정기기 특성(구성 소재·부품 내구성 등)에 따라 정도검사 주기를 차등화 (1~2년)하여 기기 노후화에 따른 문제 발생 전 사전조치토록 관리
- 정도검사 시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측정기기 사용자(수검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58. 대기 TMS 정도검사 기준과 주기의 합리화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녹색기술 개발과	과 장 김명환	044-201-6660
		사무관 정윤희	044-201-6671

□ 제도현황

- (현황)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TMS 부착 대상이 확대되므로 TMS 부착 비중이 큰 수도권 업체들의 정도검사 실시 비율 증가 예측
- (문제점) 정도검사 기관 부족에 따른 검사기관 일정 포화에 따라 검사기관 간 일정조율이 어려워, 정도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법규 미준수에 따른 벌칙은 사업자에게 돌아감
- (정책대상)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 사용자
-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환경시험검사법」 제9조 및 제11조

□ 건의내용

- 매년 진행하는 정도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
 - ※ 단, 기기조작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업장은 기존 규제 적용

□ 검토의견 (수정수용)

- 정도검사 주기는 측정기기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사안으로 일괄 연장이 어려우나,
 - 정도검사 기관을 지속 확대('20: 4개소 → '22: 9개소)하는 한편,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때 정도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검사 기간* 연장(2개월→8개월)이 가능토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
 - * 정도검사 기간 종료일 기준 30일전 ~ 30일 후

□ 향후계획

- 개정법령 시행('22.8.18일,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59.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 기준 개선

실·국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녹색전환 정책관	녹색산업 혁신과	과 장 장이재 사무관 이상수	044-201-6701 044-201-6711

□ 제도현황

- (현황) 환경표지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EL.252)' 기준, 43개 기업 /72개 기본 인증제품('22.5월 기준)
- (문제점) '프탈레이트 사용 금지'(4.5항) 항목에서 해당 물질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지 프탈레이트 범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 건의내용

- 환경표지 인증 제도에서 '프탈레이트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
 - Global trend를 반영하여 모든 프탈레이트 금지가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프탈레이트를 선정하여 금지

□ 검토의견 (수용)

- 환경표지 인증기준의 유해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국내·외 관련 법적 규제 수준 및 유사 해외인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전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현행 사용 금지 프탈레이트는 기준 내(EL.252) 정의에 따라 1, 2-벤젠 디카르복시산(1, 2-benzenedicarboxylic acid) 전체로 규정하고 있었음
- 다만,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에 한하여 지정, 대체물질 개발 및 도입 준비 필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금지물질 범위에 대한 오해 소지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 향후계획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 고시 반영 검토(~'22.7월 중)